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951호
- 나. 발 의 자 : 이원형 의원(찬성자 12명)
- 다. 발의일자 : 2025년 8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관광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활동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동 조례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 무장애 관광지·관광상품·관광서비스의 적극적인 발굴과 정보 제공을 통해 관광약자의 실질적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광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시장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3항)

다. 시장이 무장애 관광지·관광상품·관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여 관광약자의 실질적인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연계시켜, 무장애 관광지·관광상품·관광서비스의 발굴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약자의 실질적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무장애 관광 지원 확대의 필요성

○ 국내 관광약자는 2024년 기준 총인구의 31%인 1,635만명¹⁾으로, 총인구의 5%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과 2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포함하고 있음.

1) 한국관광공사, 2024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11%에서 2050년에는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²⁾되므로, 글로벌 무장애 관광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간 서울시 관광약자 여행 지원사업 현황 >

연도	예산(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참여인원	비고
2021	250	247	98.8%	1,200명	
2022	547	529	96.7%	3,367명	
2023	800	791	98.9%	4,264명	
2024	800	792	99.0%	3,306명	
2025	755	528	70.0%	2,780명	- 집행률('25. 8월말 기준) - '25년 지원목표 인원

< 최근 3년간 서울관광재단 관광약자 여행 지원사업 현황 >

지표명	'23년 실적	'24년 실적	'25년 목표
서울다누림 차량 월평균 운행횟수(회)	71회	92회	102회
시각장애인 특화 해설 참가자수(명)	238명	428명	514명

- 또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관광약자 여행 지원사업과 최근 3년간 서울관광재단 관광약자 여행 지원사업에서도 참여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수요에 따른 무장애 관광 지원은 충분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2) 문화관광연구원, 2022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차별 행위 금지 조문 신설(안 제5조)

- 동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명시하여 시장 및 관광업자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5조(장애인 관광활동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관광활동지원) ① ----- -----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시장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안 제5조제3항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하는 것은 법률적 중복에 해당하므로 시행에는 무방하며,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경우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 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 의견
제5조(장애인 관광활동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제5조(장애인 관광활동지원) ① ----- ----- --- 권리 증진을 위하여 <u>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및 관광사업자는 <u>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u>	제5조(장애인 관광활동지원) ① ----- ----- --- 권리 증진을 위하여 <u>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무장애 관광 지원 확대 신설(안 제5조의2)

- 동 개정안은 무장애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 발굴과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무장애 관광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생략) <u><신설></u>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의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의사소통을 통한 정보 제공과 접근·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음.

그러므로 무장애 관광 지원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추가하고,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원활한 접근까지 포함하는 것이 동 개정 취지에 부합함.

< 수정 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생략) <u><신설></u>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시장은 무장애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무장애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u> <u>-----관련 정보 제공과 원활한 접근-----</u> <u>-----</u>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김예영(2180-8114)
------	----------------	-------	----------------

의안번호
2951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전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전
	이원형(1인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제안이유〉 ○ 동 조례는 장애인의 관광활동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내용 부재로, 관련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연계 강화 필요 ○ 무장애 관광지·관광상품 등을 발굴·홍보하여 관광약자의 실질적인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 관광 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입법 요지〉 ○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2제3항) ○ 무장애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제2항)		
추진경과	○ 2025. 8. 11.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발의자 : 이원형 의원) - (찬성자)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철성 등 12명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 수정가결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과 장애인의 차별 금지 규정은 관광약자의 권익 보호 필요한 사항이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개정('25.3.18.) 및 제24조2의(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반영 사항 ○ 관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규정은 관광약자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적 관광 환경 조성 기여에 의의가 있어,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 ※ 타시도 유사 조례: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자원 조례」 제12조(사업)		
대응방안	○ 해당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팀장 현윤성(☎2133-2781)	담당 강성욱(☎2133-2787)